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2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0. 20. 강명숙 의원 외 8인

나. 회부일자: 2020. 10. 20.

다. 상정일자

- 제2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 10. 27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강명숙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상위법인 「지방재정법」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 내용이 상이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 삭제
(안 제30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- 하위 법령인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27조제2항에 제4호를 추가하여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 이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를 보면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”라고 명시하고 있는바,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는 아니 되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【참고자료】

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「지방재정법」

제32조의8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2.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4.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

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(同種)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(相計)할 수 있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.

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